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40호 2018. 2. 5.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2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16
- 정선군 조례 제26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21
- 정선군 조례 제2626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28
- 정선군 조례 제262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1
- 정선군 조례 제2628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35
- 정선군 조례 제2629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00호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48
- 정선군 규칙 제1301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5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조 례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
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5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u>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시행일 : 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별표 4] <개정 2017. 9. 19.>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 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16.2.11.>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16.2.11.>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17. 2. 3.>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0] <개정 2016. 11. 1.>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

- 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
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
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
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
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
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
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
는 것은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개정 2017. 2. 3.>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8] <개정 2017. 2. 3.>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개정 2016. 6. 30.>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 시설)은 제1항부터 제4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u>1.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결정 고시된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u>2. 5호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 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4호 이하는 300미터 이내)</u> <u>3. 자연취락지구 및 관광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u>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시설 중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개발·보급·촉진법』에 의한 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급증하여, 경관저해·자연재해·재산 가치하락 우려 등으로 주민갈등 유발
- 나. 용도지역 안에서 적용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에 시설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 중,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주요내용

- 발전시설 허가기준 신설(안 제21조제5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가목 (3)(2017. 12. 29.개정 공포, 2018.06.30.시행)에서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제5항에서 신설(2018.07.01.시행)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과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그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군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2. “후생복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라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공무원의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복지제도·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실현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복지제도”란 후생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인력·장비, 규정·예산 등을 갖추고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4. “맞춤형 복지제도”란 군수가 복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복지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복지항목 및 복지점수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가. 복지항목: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 및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
 - 나. 복지점수: 해당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지항목별로 두는 계산단위
5.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각각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체활동 등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효율적 장애예방·보완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복지제도는 재직 중인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에 준하여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경우에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후생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복지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근무능률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복지사업) ① 군수는 공무원에게 법 제77조에 따른 후생복지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3.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4. 공무원 개인별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직장 동호회 활동

나. 해외문화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

다. 국내 가족배낭여행

라.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마. 생일 축하선물(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지급

바. 정년· 명예퇴직의 경우 공로패 또는 기념패 수여. 이 경우 각각 기념품을 포함할 수 있다.

사. 직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후생 복지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휴게시설
2.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시설
3. 임신과 출산 여성공무원 휴게실 및 수유시설
4. 공무원 및 그 가족 여가선용 콘도 및 휴양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확보하는 시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 ① 군수는 공무원의 효과적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항목을 구성하고, 복지점수를 부여 및 정산하여 해당 점수 1점을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복지점수 정산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 정산·관리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그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이동편의시설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업무를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의 선정, 계약체결 및 해당 배정대상자에 대한 사후 관리
3.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전문기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수행계획서 및 해당 경비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자격요건에 미달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4. 보조금을 지급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지정업무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제9조(후생복지 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복지사업의 시행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적립기금 등을 포함한다) 처리
4.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복지업무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를 지냈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보건·복지 등의 업무담당
3. 공무원을 대표(직급·직렬·여성대표 등을 말한다)할 수 있는 공무원
4.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임규정 등) ① 복지사업의 시행,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복지사업: 지원범위 등 세부적 사항
2.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항목의 구성과 복지점수의 부여·정산, 상한선·부여기준

및 관리

3.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절차·방법,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② 군수는 제9조제5항의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은 전문기관에 대한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정선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 맞춤형복지제도운영 및 단체보험 가입
-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 해외문화체험연수(배낭여행)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및 신규직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라.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규정함. (안 제7조)

마.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안 제8조)

바. 정선군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구성함. (안 제9조)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6호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를 “군수가 지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 구성한다”를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5조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u> 2. <u>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 3. <u>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u> 4. <u>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u> 5. <u>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제6조(기능) <u>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u>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u> ④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u>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 <u>군수가</u>

업무관련담당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 공립어린이집의 자율적이고 특성있는 운영을 위해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1. ~ 4. (생략)

② 위원장은 당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공립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①-----

----- 사람으로 구
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 해당 -----

-.

③ 운영위원회는 법 제25조제4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관한 사항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관한 사항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8.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하고,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2014.04.25.>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이라 한다)제25조에 따른 운영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발생한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④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이상개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한다. -----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다.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
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 규
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
탁취소 된 날로부터 5년간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 및 공립어린이
집의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하
고, 수탁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
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사람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4.0
4.25.>

제19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수탁
자가 개인일 경우 정선군의 관

<삭 제>

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
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본조
전문개정 2014.04.25.>

제22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을 사용한때
3.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한때
4.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
쇄 또는 취소된 때

<삭 제>

제안이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정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함.

(안 제6조, 제8조, 제15조)

나. 공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함 (안 제18조)

다. 정선군내에서 개인이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던 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위임없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로 삭제함.(안 제19조)

라. 어린이집에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 (안 제22조)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7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만원” 을 “15만원” 으로, 제3항 중 “20만원” 을 “30만원” 으로,
제4항 중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를 “제12조를 따른다”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2조(정의) ----- ----- <u>뜻은</u> -----.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u>10만원</u> 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 5. (생략)	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 ----- ----- ----- ----- <u>15만원</u> ----- -----.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u>20만원</u> 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③ ----- ----- ----- <u>30만원</u> ----- -----.
④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u>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④ ----- ----- ----- <u>제12조를 따른다.</u>

제안이유

-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나.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구현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 함. (안 제9조)
-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 으로 인상함.
 -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 으로 인상함.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8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만 65세 이상인”과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사람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법률 제3조제2항 제3항에”를 “법 제39조제1항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10만원 범위에서”를 “15만원”으로, 제2호 중 “20만원 범위에서”를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급부적격자가”를 “지원부적격자가”로 한다.

제7조 중 “전출 및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을 “전출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6.25 전쟁 및 월남참전에 참전한 정선군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 ----- ----- ----- ----- -----.
제3조(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u>만 65세 이상인 사람</u> 으로 한다. 다만, <u>고엽제 후유의증 판정</u> 을 받은 사람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u>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u>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 <u><삭제></u> ----- ----- <u>< 삭 제 ></u> ----- ----- ----- 법 제39조제1항에----- -----.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매월 <u>10만원 범위에서</u> 지급	제4조(지원사업) ----- ----- ----- ----- -----. 1. ----- ----- <u>15만원</u> -----

2.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

3. (생 략)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급부적격자가 있는
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
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유공
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
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군·자치
구로 전출 및 제3조 단서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
시 군 관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군
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
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하여 거주목적 여부
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
고, 이에 따라 군수는 지급의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2. -----
30만원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부적격자가 -----

--.

제4조(지원사업) -----

----- 전출한 -----

-.

제안이유

-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 나.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구현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안 제1조)
- 「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띄어쓰기 함.
- 나. 지원대상자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위법령의 조항에 맞게 변경 함. (안 제3조)
- 지원대상자의 만 65세 이상,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자의 만 60세 이상 규정 폐지
 -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법 제39조제1항
- 다. 참전유공자 참전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을 규정 함. (안 제4조)
- 참전공로수당을 “월 10만원 범위에서” “월 15만원” 으로 인상함.
 - 사망위로금을 “20만원 범위에서” “30만원” 으로 인상함.

제242회 정선군의회(2018. 01. 26.)에서 의결된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29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같은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를 “시행규칙에서 위임”으로, “그밖”을 “그 밖”으로, “필요한”을 “그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를 “제12조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0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5조제1항 중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u>같은법</u> 시행령 및 <u>같은법</u>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u>그</u>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u>그밖에</u>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같은법</u> ----- <u>시행규칙에서 위임</u> ----- ----- <u>그 밖에</u> ----- ----- <u>그 시행에 필요한</u> -----.
제2조(정의) 이 <u>조례에</u>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u>조례에서</u> ----- --- <u>뜻은</u> -----.
1. “상인”이라 함은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 <u>이란</u> ----- ----- ----- ----- -----.
2. “점포”라 함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2. ---- <u>란</u> ----- ----- ----- ----- -----.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	3. ----- <u>이란</u> ----- ----- ----- ----- ----- -----

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라 함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이란 -----

-----.

7. -----란 -----

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
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
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라 함은 법 제67
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
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
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생
략)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
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
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

----- 제12
조를 따른다.

8. -----란 -----

-----.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
되는 시설과 부지)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현행
과 같음)

②-----

----- 다만

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 하는 경우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

<삭 제>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2개월 -----

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신 설>

<신 설>

제35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일 -----
-----.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35조(위탁관리) ①-----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
리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안이유

2017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대상에 의거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하고, 정산보고서 제출시기를 수정하며, 자료제출기간 및 대상자료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상인회 등록취소 조항 삭제함. (안 제26조)
- 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14일이내” 에서 “2개월이내” 로 개 정함. (안 제27조)
- 다. 군수의 요청자료에 대한 제출 기한을 “10일이내” 에서 “20일이내” 로 개정함. (안 제30조제2항)
- 라. 군수의 요청자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함. (안 제30조제2항)

규 칙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0호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자체 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 을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2년” 을 “3년” 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 을 “2년”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15일전” 을 “7일전” 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30일” 을 “2개월”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 ----- ----- ----- ----- -----.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u>본청 및 그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u>	1. ----- <u>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면</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3조(감사의 종류) ① (생략)	제3조(감사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감사는 <u>2년</u> 에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u>3년</u>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제6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은 <u>5년</u> 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선발한다.	① ----- <u>2년</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생략)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고 감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1조(재심의신청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7일전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재심의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2개월 -----
-----.

제안이유

- 가. 상위법령의 개정 및 불일치 사항을 반영하여 자체감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함.
-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기준에 따라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 다. 양구군 의회 직원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대책으로 의회사 무과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과를 포함시켜 자체감사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
- 나. 징계시효에 따라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함. (안 제3조)
- 다. 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개정함. (안 제6조)
- 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일을 개정함. (안 제10조)
- 마. 재심의 신청 처리기한을 개정함. (안 제21조)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01호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단서 중 “없다”를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정선 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및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실장과 통합지출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무회계과장은”을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로, “통합지출관 본청”을 “본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회계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규정에 의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3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3호 단서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

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서식 제112호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제16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생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없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을 따른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정선 군세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세무회계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회계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

-- 「지방세기본법」,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및 「정선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 기획감사
실장과 통합지출관-----.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

----- 본청 -----

· 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회계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② (생 략)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② (생 략)

제8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8조(수납절차) ①·② (생 략)

-----.

③ 통합지출관-----

--.

제6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규정을 따른다.

제69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 행정안전부장관-----
-----.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 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124조(계약실적보고) ① (생략)

② 세무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

③ -----

----- 납입-----

-----.

제124조(계약실적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제144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 행정안전부장관-----

-----.

제15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행정안전부장관-----

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 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채권관리관이 제143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제155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별지 제11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

<신설>

-----.

-----.

제154조(채권관리부 기록대장) -

-----.

1. 2. (현행과 같음)

3. -----

-----.
----- 「지방세징수법」-----

-----.

4. 그 밖에 -----

제155조(채권의 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서식 제112호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63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제161조(국가규정의 준용) -----

행정안전부장관-----

-----.

제163조(기타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 행정

안전부장관-----.

개정이유

- 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통합지출관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회계 부서간 기능 조정 및 회계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 나. 자치분권을 저해하는 과도한 제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미흡한 규제 를 개선하고, 지방회계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합자금 운용준비

- 통합지출관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자금배정 기능 및 지출종합계획수립등에 관한 부서간 기능을 조정함.
(자금운용 : 세정부서 → 경리부서 이관)

나.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직무대리 규정 보완

- 회계관직 겸직금지 원칙에 따라 회계관직공무원 뿐 아니라 회계관직 공무원의 휴가·출장 시 직무 대리하는 직무대리자도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나, 정원이 소수(5인 이내)인 관서로서 예외적으로 회계관직 겸직이 허용되는 관서의 회계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가 발생하면, 그 직무 대리자도 겸직이 허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

다.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 권리제한 개선

- 과도한 채권독촉 절차를 상위법령에 부합하여 개정하여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세외수입 징수절차 규정 등을 보완